

# 30대 기혼 채무 불이행자의 특성에 관한 심층연구\*

## An In-depth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Defaulters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강 사 김 미 라\*\*

순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 수 김 혜 선\*\*\*

Dept. of Family Environment and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

Lecturer : Kim, Mi-Ra

Division of Social Welfare and consumer science, Sunchon National Univ.

Professor : Kim, Hea-Seon

---

### <Abstract>

There are few studies on the characteristics of defaulters, though research in this field is nee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social, economic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defaulters who are married and in their thirties. For this study, an in-depth interview was used.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The focus of this study is defaulters who are married, in their thirties, have managed small businesses by themselves or with their spouses and have experienced job fluctuation. There were a lot of reasons for their becoming defaulters. Most of all, a slump in business with the occurrence of individual events caused them to be enrolled as defaulters. The monthly mean income of defaulters was 1,800,000~5,000,000 won, yet it was irregular. Moreover, they were dependent upon labor income or business income. The monthly mean expenditure of defaulters was 1,000,000~2,300,000 won, which constituted about 26%~57.5% of their monthly mean income. The defaulters needed to budget a number of expenditures such as food and private education. Defaulters had 25,000,000~128,000,000 won in debts and 300,000~3,000,000 won per month in debt payments. Most of them didn't have any emergency funds, monetary assets or fixed assets. Interestingly, they showed high tendency to use debt and low skill for their money management. Defaulters had short time horizons and were likely to buy something on the spur of the moment.

---

▲주요어(Key Words) : 채무 불이행자(defaulters), 부채(debts), 부채상환(debt payments),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 비상자금(emergency funds)

---

\* “이 논문은 2005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 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 되었음(KRF-2005-043-C00007).”

\*\* 주 저 자 : 김 미 라 (E-mail : mrkim@jnu.ac.kr)

\*\*\* 교신저자 : 김 혜 선 (E-mail : kim3672@sunchon.ac.kr)

## I. 서론

신용은 기업과 소비자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재정자원의 탄력적 사용이라는 편리함을 제공하기 때문에, 경제선진국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그 사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은 미래에 발생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미래의 소득이 현재 예측한 정도로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가계대출의 경우에는 기업대출과는 달리 가족원들의 생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수준은 매우 심각한 형편이며 개인파산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활동 수준이 아직 미성숙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가계대출시장이 수십 년을 거쳐 형성된 선진국의 경우에도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기는 시점에서는 신용대출 급증 및 연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국가나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신용불량자의 수는 각기 다르기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과는 달리 허용범위 이상의 신용불량자를 단기간에 대량으로 양산되었기 때문에 시스템과 의식의 문제가 더욱 크게 제기된다(국정브리핑, 2008). 따라서 금융채무 불이행자 문제는 신용거래가 급증하는 속도를 시스템이나 의식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비롯된 과도기적 혼란으로 이해된다(머니투데이, 2006).

금융채무 불이행의 원인은 다양하다. 먼저 수요의 측면을 고려하면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가계대출과 경기침체로 인한 소득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쓰고 보자는 식의 소비성향을 지적할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신용불량의 가장 큰 원인은 신용불감증이라고 지적하면서 신용의 사용에 앞서 신용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박상수, 2002; 이상경, 2003). 다음으로 공급의 측면을 고려하면 외환위기와 대우사태, 그리고 현대사태를 겪은 이후 금융기관들이 대출규모는 작지만 예대마진이 높은 가계대출을 선호했으며, 국민의 정부 시절 내수 진작을 위한 카드부양책은 카드남발을 낳았다. 2000~2002년 부풀어 오르던 가계부채 버블은 2003년 초부터 터지기 시작해 매월 10만 명의 '신규 신용불량자'를 양산했다(국정브리핑, 2008). 우리나라의 신용문제는 신용사용에 대한 의식도, 신용문제를 해결할 만한 시스템도 부족한 상태에서 신용사용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맞물리면서 사회문제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금융채무 불이행자 중에서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1.5%로서 매우 높으며, 다른 연

령대에 비하여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2005). 이들이 앞으로 우리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잠식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건범, 2003).

우리사회에 신용사용에 대한 의식과 행동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용관리교육을 강화하여 합리적인 신용관리행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에 대한 홍보와 상담활동을 강화하여 인식을 전환함으로써 의식이나 관련 지식 부족으로 인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아울러 기존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회생방안을 마련하는 사후적인 노력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도 금융채무 불이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대책마련에 노력해 오고 있다. 그러나 2007년 9월말 우리나라의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66만명으로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약 10.9%에 달한다(국정브리핑, 2008). 그동안의 흐름을 볼 때,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금융채무 불이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인 대책보다는 각 대상별 특성에 따른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선결과제로서 대상별 채무불이행의 프로파일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최근 금융채무 불이행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관련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으나, 주로 관련 제도에 관한 고찰이나 거시경제적인 영향에 대한 것으로서,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이는 우리나라의 신용정보제도의 역사가 일천하다는 데에도 원인이 있지만,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으로 인해 모집단이 잘 드러나 있지 않아서 경험적인 조사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개인파산에 있어서 경제적 특성보다 사회심리적인 특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처럼(Evans & Lown, 2008), 채무 불이행에 있어서도 경제적 특성보다 사회심리적인 특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사회심리적인 특성에 대해 간과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나라 경제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30대의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이들의 직업의 역사를 파악하고, 이들이 채무를 불이행하게 된 경위를 심층 분석하고,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 부채사용의도, 재무관리행동, 소비자행동, 시간지평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개념정의와 등록기준

신용불량자등록제도 하에서 신용불량자는 “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제1장 제2조 제7호에서 정의되어 왔으며, 이에 따르면 “신용불량자라 함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발생한 대금 또는 대출금 등의 채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된 기일 내에 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러한 신용불량정보의 대상자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자율적인 규약인 “신용정보관리규약”의 제3장 제8조에서 “대출금 등의 연체나 용도 외 유용사실, 지급보증 대지급금 발생사실, 신용보증 대지급금 발생사실,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리스자금 또는 리스료의 연체사실, 신용카드대금 미결제 등 신용카드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무보증사채 상환불이행 사실,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손실을 초래케 한 사실 등의 사유를 발생시킨 자”로 정의하고 있다.

과거 신용불량자 제도 하에서 신용불량자는 단순히 3개월 연체라는 금융권의 신용정보로서 뿐만이 아니라 불량경제주체라는 의미로 해석되었다. 심지어는 사회적 낙인으로까지 인식되어 취업기회가 원천적으로 제한되거나, 획일적인 기준으로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등과 같은 사회적·경제적인 부작용들이 유발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4년 12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개정을 통해 신용불량자등록제도를 폐지하여 2005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였다. 개정된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를 폐지하고, 신용평가기관(Credit Bureau)의 활성화 및 개인신용정보공유의 확대 등 신용인프라를 구축하여 각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적으로 금융거래 실적과 채

무상환 이력 등 개인의 신용도에 기초한 체제로 전환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개정된 법률에서는 신용불량자 대신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신용불량정보는 신용거래정보에 통합되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제도에 의한 신용불량자와 새로운 신용거래정보 등록자를 모두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신용불량자등록제도 하에서는, 통상 거래대금이나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며, 이러한 신용불량정보의 대상자에 대한 등록과 해제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자체 관리기준에 의거하여 각각의 신용불량정보의 사유별로 정하였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30만원과 3개월을 기준으로 그 이하인 경우 연체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및 해당 금융기관에서 관리하지만, 초과건에 대해서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전 금융기관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연체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연체금액을 모두 상환하여 해당 연체사유가 해소된 때 신용불량정보도 해제되었다.

그러나 ‘신용불량정보’가 ‘신용거래정보’로 통합되고, 연체금 상환 후의 기록보존 기간이 과거 최대 2년에서 1년으로 변경되었으며, 연체정보 공유를 위한 금액기준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다소 완화된 것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신용정보의 관리기준은 신용불량자등록제도 하에서의 관리기준과 거의 비슷해서, 일단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연체정보가 등록이 되면, 연체 대금을 상환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사실기록을 보존함으로써 신용기록이 삭제될 때까지 상당기간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신용정보주체는 개인, 개인기업, 법인 및 관련인으로 나뉘는데 개인의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의 등록사유 및 기록보존기간에 관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1>.

<표 1> 연체정보의 등록사유 및 기록보존

구 분	등록사유	기록보존기간
대출금 연체	교육부나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원금, 이자 등을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최장 1년) - 등록 후 90일 이내 변제 또는 등록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제와 동시 삭제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주택자금대출금을 9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신용카드 대금연체	5만원 이상의 카드론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최장 1년) - 등록 후 90일 이내 변제 또는 등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해제와 동시 삭제
할부금융 대금연체	5만원 이상의 할부금융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자료출처 :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2006-6차 반영>

&lt;표 2&gt; 개인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증가 추이

(단위:만명)

	97.12	00.12	01.12	02.12	03.12	04.12	05.12	06.12	07.9
전체 금융채무 불이행자	143.0	208.4	245.0	263.6	372.0	361.5	297	280	266
경제활동인구	2,178	2,207	2,242	2,288	2,292	2,337	2,352	2,377	2,434
경제활동인구/불이행자(%)	6.6	9.4	10.9	11.5	16.2	15.5	12.6	11.8	10.9

&lt;자료출처 : 재정경제부(2004), 국정브리핑(2008), 통계청 자료&gt;

## 2.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추이

2007년 9월 우리나라의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66만명으로서 이는 경제활동인구(2,434만명)의 약 10.9%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증가 추이를 주요 관련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면<표 2>, 먼저 1997년도의 외환위기로 인한 IMF구제금융 수혜 이후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불경기가 지속됨으로써 대출금상환이 어려워져 1997년 말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수가 143만명에 달했다.

이후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 1월 정부가 시행한 금융사면에도 불구하고 2000년 말 208만명 수준으로 상승한 후, 2001년 4월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등록 기준이 강화됨으로써 2001년 말 245만명으로 증가하였다.

2002년 5월 정부가 카드규제를 실시하였고, 이에 발맞추어 신용카드사들도 현금서비스의 한도를 축소하기로 함으로써 이른바 '카드 돌려막기'가 금지되면서 2002년 말 263만명으로 증가하였다.

2003년 카드를 중심으로 가계신용이 급격히 감소되면서 2004년 4월 382만 5000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2004년 3월 정부가 내놓은 "3. 10 금융채무 불이행자 종합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2004년 6월부터 다소 감소되는 양상을 보여, 2004년 12월말 약 361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2005년 3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미성년자, 군인 등 소득원이 없어 채무재조정이 불가능한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제도가 발표되고, 이와 함께 3월 31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일명 '통합도산법')이 제정되어 그동안 제도권 금융 내에서 구제받을 길이 없었던 사채를 이용한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하기 시작하면서 채무불이행자의 수는 점차 줄어들어 2007년 9월 266만명이었다.

이러한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수는 IMF 경제위기 직후인 1997년 12월말의 143만명과 비교할 때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3. 10 신용불량자 종합대책"의 하나로서 금융채무 불이

행자의 등록에서 제외된 세금채납자 약 15만명과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신용불량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를 포함하면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받는 개인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추이에서 중요한 특징은 전체 기간에 걸쳐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 것이 아니라,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늘어났다고 하는 것이다. 두 번의 분기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1997년 말을 기점으로 한 단계 높게 점프를 하고 이후 그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다가, 2002년 3사분기를 기점으로 다시 큰 증가세를 보였다. 두 번에 걸쳐 발생한 증가세는 상이한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전자는 외환위기의 와중에서 경기가 갑작스럽게 곤두박질침에 따라 소득이 감소하고 실직이 늘어나는 가운데 발생한 '경기의존형(cycle dependent)'이었고, 후자는 신용카드사 등 소비자 금융기관의 영업관행 변화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신용주도형(credit driven)'이었다(박종현, 2003). 김순영(2005)도 금융채무 불이행자 증가의 절대적 원인이 정부의 신용카드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한 과소비자가 아니라 경제위기 이후 불안정고용에 시달리면서 실질소득 감소를 경험했던 저소득층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강경훈(2008)도 복합적인 요인들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과도한 카드부양 때문이라고 하였다.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추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표 3>, 2004년 12월말 30대(31.5%)가 가장 많고, 40대(30.9%), 20대(17.7%), 50대(12.8%), 60대(7.0%), 10대(0.1%)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비중을 분석하면, 20대가 13.8%, 30대가 18%, 40대 이상이 15.2%로서 3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나서 경제활동을 하는 30대 약 5명 중 1명은 금융채무 불이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가장 활기차게 해야 할 30대의 금융채무 불이행자 비중이 가장 높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잠식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임대봉·이병완, 2005).

특히 성별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수가 급증할 때, 남성에 비해 여성의 신용상태가 빠르게 악화되었으며, 3. 10 대책 이후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수가 감소세에 들어섰을 때에도 남성에 비해 여성의 감소폭이 적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여성

2)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금융기관에 3개월 이상 연체의 경우, 세금을 500만원이상 체납하고 1년이 경과하도록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등록

&lt;표 3&gt; 개인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연령별 증가 추이

(단위:만명,%)

연령	연도		2001년 12월		2002년 12월		2003년 12월		2004년 12월	
10대	1.20	( 0.5)	0.65	( 0.2)	0.45	( 0.1)	0.20	( 0.1)		
20대	40.8	(16.7)	48.8	(18.5)	73.1	(19.7)	63.9	(17.7)		
30대	70.4	(28.7)	75.9	(28.8)	113.3	(30.5)	114.0	(31.5)		
40대	76.7	(31.3)	80.6	(30.6)	110.0	(29.6)	111.8	(30.9)		
50대	32.1	(13.1)	33.7	(12.8)	45.4	(12.2)	46.3	(12.8)		
60대 이상	23.8	( 9.7)	23.9	( 9.1)	29.5	( 7.9)	25.3	( 7.0)		
계	245.0	(100.0)	263.6	(100.0)	372.0	(100.0)	361.5	(100.0)		

&lt;자료출처 : 재정경제부(2004) 보도자료를 수정·보완함&gt;

&lt;표 4&gt; 개인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연령별 채무금액

(단위:명)

채무금액	연령	연령						합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500만원미만		1,599	333,163	325,595	286,852	121,336	81,956	1,150,501
~1천만원미만		291	100,353	162,251	152,231	62,053	35,819	512,998
~3천만원미만		92	135,161	335,766	319,594	126,827	67,768	985,208
~5천만원미만		6	42,271	152,613	148,203	57,771	26,134	426,998
~1억원미만		4	24,125	123,603	133,627	52,920	22,173	356,452
1억원이상		2	4,361	39,788	77,931	41,834	19,294	183,210
합계		1,994	639,434	1,139,616	1,118,438	462,741	253,144	3,615,367

&lt;자료출처 : 재정경제부(2004) 보도자료&gt;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될 수 있다.

개인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채무금액은 500만원 미만의 경우가 전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1천~3천만원 미만, 500~1천만원 미만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 10대와 20대의 경우 500만원 미만의 소액채무자가 대다수임을 알 수 있었다<표 4>.

재정경제부에서 2004년 1월~2월에 금융채무 불이행자 3,939명에 대하여 심층 전화면접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소득은 평균 113만원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시점의 소득에 비교할 때 당시보다 약 85만원이 감소하여 57%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소득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부채는 등록당시 평균 4,372만원에서 4,094만원으로 평균 278만원이 감소하여 94%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소득의 감소폭에 비해 부채의 감소폭은 그리 크지 않아서, 빠른 시간 안에 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또한 소득과 부채의 분석을 통해 채무상환에 소요기간이 8년 이내인 경우가 52%, 8년 이상인 경우가 48%인 것으로 나타나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문제해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채무상환의 기대기간이 긴 금융채무 불이행자에게는 장기에 걸쳐 상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다음으로 2005. 2월의 재정경제부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실태조사 결과 중에서 청년층 신용불량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표 5>, 먼저 학자금 연체로 인한 청년층 신용불량자의 경우 신용불량 등록 당시 원금의 합계가 1인당 약 228만원이었으며, 채무구간별로 볼 때 500만원 이하가 83.1%, 500만원 초과가 16.9%로 나타났다. 또 신용불량 등록기간은 1년 미만이 65.4%, 1년 이상이 34.6%이었으며, 금융업권별로는 은행이 39.4%, 신용카드사가 28.9%, 보증보험이 1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용불량 등록당시 미성년자였던 청년층 신용불량자의 경우 학자금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에 비해 채무금액이 약간 더 많았으며 등록기간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즉 등록 당시 원금의 합계가 1인당 약 360만원이었으며, 채무구간별로 볼 때 500만원 이하가 77.7%, 500만원 초과가 22.3%로 나타났다. 또 신용불량 등록기간은 1년 미만이 13.4%, 1년 이상이 86.6%이었으며, 금융업권별로는 보증보험이 42.1%, LG-산은 공동추심이 16.1%, 은행이 12.7%, 카드사가 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결과 청년층 신용불량자의 대부분이 단기 소액

&lt;표 5&gt; 재정경제부 금융채무 불이행자 실태분석 결과

	등록시점(a)	현재(b)	비고(b/a)
월소득(평균)	198만원	113만원	57%수준
총부채(평균)	4,372만원	4,094만원	94%수준
총부채/연소득	1.72배	3.22배	-
직업	자영업 43% 정규직 31% 임시직 13% 주부 6% 학생 3% 무직 4%	자영업 21% 정규직 29% 임시직 27% 주부 7% 학생 1% 무직 15%	- 자영업, 정규직의 감소 - 임시직, 무직의 증가

<자료출처 : 재정경제부(2004) 보도자료>

채무자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이나 군복무 등의 이유로 채무의 상환이 곤란한 경우가 많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의 결과는 조사대상이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와 신용불량 등록 당시 미성년자였던 청년층 신용불량자만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전체 청년층 신용불량자의 특성이라고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영세자영업자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면, 먼저 2004년 말 금융채무 불량자 중 영세 자영업자는 15.3만 명이며, 연체정보가 등록된 당시의 원금은 1인당 약 3,985만원이었으며, 1,000만원 이하가 43%(전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47%), 1,000만원 초과에서 3,000만원 이하가 28.6%(전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27%), 3,000만원 초과 고액 채무자가 29%(전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26%)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40대가 71%였으며, 업종별로는 도소매업(26.6%), 제조업(23.7%), 음식·숙박업(7.2%), 건설·부동산·사업서비스(11.7%), 기타(20.8%)의 순이었다. 연체 이유는 사업부진 또는 실패(81.8%), 카드돌려막기 불가능(11.2%), 부채과다(6.9%), 병원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3.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90.4%가 대출금 상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중 48.2%는 사업소득으로 상환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가족 또는 친지도움(27.1%), 부동산 등 처분(14.0%), 사업체정리(9.4%), 기타(1.3%)의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영세자영업자의 금융채무 불이행은 사업부진이나 사업실패가 주된 원인이며, 연체정보 등록 부채원금은 약 4,000만원으로 상당수가 대출금 상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로 30~4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 3. 신용회복 지원제도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 관련 지원제도는 연체금의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

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수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신용회복지원제도는 크게 사적제도와 공적제도로 나눌 수 있다<표 6>.

사적제도로는 해당 채권금융기관의 자체적인 구제제도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중심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제도 등이 있다. 공적제도로는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가 있으며, 정부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은 준공적 성격을 지닌다.

채권금융기관의 자체적인 구제제도는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기관에 대해 2002년 7월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자체적으로 신용회복지원절차(credit repair program)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은 배드뱅크, 희망모아, 기초수급자지원이 있으며, 채권금융기관의 자체적인 신용회복지원 절차에 의해서 연체자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다수의 금융기관에 과중한 채무가 있는 개인 채무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다.

배드뱅크 프로그램은 채무자가 금융기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서류상의 회사인 한마음금융으로부터 장기 저리로 신규대부를 받아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채권을 상환하는 절차로서, 2004년 5월부터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으며, 기존 신청자에 대해서 관리를 계속하고 있다. 배드뱅크 프로그램이 종료됨에 따라 아직 채무재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고, 여러 금융기관에 다중 채무로 인한 추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동추심활성화프로그램인 희망모아 프로그램이 2005년 5월부터 상설되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002년 10월 금융기관 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해 출범한 금융기관 공동채무조정기관이며, 워크아웃제도는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위원회가 심사를 해서 적격으로 판단되면 해당

<표 6> 우리나라의 사적·공적 신용회복지원제도

구 분	사적제도		준공적		공적제도	
	개별금융기관	Band Bank	개인워크 아웃	신용보증 기금	개인회생	개인파산
운영주체	개별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 위원회	신용보증 기금	법 원	
시행시기	2003. 3.~	-2004.5.~11 한마음금융 -2005. 5. ~희망모아	2002.10.1~	1976~	2004.9.23~	1962.1.20~
대상 채권자	해당 금융기관	협약가입 금융기관	협약가입 금융기관	신용보증 기금	제한없음 (사채포함)	
대상 채무자	소액 연체자	연체등록 채무자	연체등록 채무자, 급여생활자 개인사업자는 최저 생계비 이상소득자	사업자	급여생활자	파산원인자
채무범위	소액 (1,000만원이하)	5,000만원 미만	5억원 이하	제한없음	담보채무(10억) 무담보채무(5억)	제한없음
채무조정 수준	금융기관별 자체 기준	이자면제, 8년 이내 장기저리상환 원금감면없음	이자면제가 원칙*, 8년 이내 원금 상환	채무자의 재산 따라 기준상이	5년간 성실 변제 후 남은 채무 전액	채무 전액
법적효력	사적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시 면책		면책불허가 사유없는 경우 면책
연체정보 해제여부	약정체결시	대부승인시해제	신용회복지원 확정시 해제	총채무액의 10%이상 상환시	변제계획인가시 해제	면책결정시 해제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신속하며 비용이 낮음</li> <li>- 금융기관을 통해 홍보 및 절차 안내가 잘 이루어짐</li> <li>- 소비자신용상담 및 교육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li> <li>-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보증인에게도 확정효력동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대상 채무액의 범위가 넓고 사채도 포함</li> <li>- 청산시보다 변제액 많으면 원금 감면도 가능</li> <li>- 법적으로 면책되므로 강력함</li> </ul>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보증기금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나 법인 및 조합이 대상이지만, 그 외는 모두 개인연체자로 등록된 자만 신청가능</li> <li>- 금융기관 외의 사채 등에 대해서는 조정이 불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서류 및 절차가 복잡</li> <li>- 법원접수비용과 대리인비용 부담</li> <li>- 생계비 기준의 비현실성</li> <li>-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선고"의 불이익이 따르며 면책불가사유 해당여부가 불투명</li> <li>- 개인의 특별사정반영 등의 융통성적음</li> <li>- 보증인에게는 회생인가 또는 파산선고의 효력이 없음</li> </ul>	

\* 신용회복위원회의 원금 감면은 상각채권(대손충당금을 쌓은 채권)에 한하여 1/3까지 가능했는데, 2005. 11. 11.부터 1/3 제한을 없애 상각채권에 한해 원금의 전액 면제도 가능해 짐.  
<자료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2006)와 최현자(2006)의 수정·보완>

채권금융기관의 동의절차를 얻어 기간연장,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등을 통해 채무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범위가 최소생계비를 상회하는 정기적 수입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2003년 8월까지 전체 300만명이 넘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들 중 7,346명만이 이 제도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였다.

이상의 프로그램들은 사적협약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금융기관들이 운영하고 있어서 채무자의 입장보다는 채권자의 입장을 반영하기 쉬운 구조에 있으며, 채무자의 상황에 맞도록 원금이나 이자의 감면을 통한 상환을 유도하기보다는 신규대출로 연체금을

갚게 하는 대환대출이 많아서 프로그램 탈락자가 많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가 전액을 출자하여 만든 중소기업 지원기관인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나 법인 및 조합을 대상으로 보증업무와 채권회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채권에 문제가 생기면 해당 금융기관의 연체금을 채무자 대신 갚아주고 해당 채무자를 대상으로 기간연장,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등을 통해 채무를 재조정하여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공적제도인 개인회생제도는 매달 고정 소득이 있는 경우 5년 동안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 모두를 채

무상환에 사용하여 회생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나머지 채무가 자동으로 소멸되도록 하고 있다.

개인파산제도는 부족하나마 자신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채무를 최대한 상환하고, 이후에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나머지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회생계획이 중단되거나 파산후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 4. 선행연구 고찰

채무불이행자 또는 신용불량자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로 먼저, 신용사용경험자 1,000명과 신용불량자 200명을 대상으로 한 조혜진과 최현자(2006)의 연구에서는, 신용과다사용의 심각도에 따라 고위험집단, 위험집단, 잠재위험집단, 무위험집단으로 분류한 결과, 신용불량자의 96.85%가 고위험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직업(영업/자영/노무직), 총 부채액, 월평균상환액(-), 강박적 태도, 재정상태인지(-), 무관심한 지출습관, 투기성향이 이들의 신용과다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들은 특히 재정상태인지와 무관심한 지출습관이 모든 집단의 신용과다사용 심각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므로, 자신의 재정상태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에 맞는 재무관리 능력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금융채무 불이행자와 연체미경험자의 재무상태, 신용에 대한 태도 및 재무관리행동을 비교분석한 성영애·정희영(2006)의 연구에서는 주택소유형태, 가구주연령, 가구주학력, 주요소득원이 차이를 보여,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연체미경험자에 비해 월세, 30대 이하, 고졸, 비정기적 근로소득이 높은 분포를 보였다고 보고하였으나, 교차분석의 검정결과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또한 집단간 재무상태를 비교한 결과, 금융채무 불이행자 가계는 월평균 가계소득, 월평균 가계생활비, 월평균 가계저축액, 부동산규모, 금융자산규모가 더 작은 반면, 월평균 가계부채 상환액, 가계부채잔액, 월부채부담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용에 대한 태도와 재무관리행동을 비교한 결과,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경우 연체미경험자에 비해 신용사용에 대한 허용적 태도가 높고, 신용결제에 대한 적극적 태도는 낮았으며, 재무관리행동의 수행정도는 더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신용불량자의 신빈곤 실태를 파악한 류정순(2004)은, 부채의 원인은 주로 카드돌려막기(31.3%), 사업자금(22.6%), 생계비(13.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신용불량 빈곤층의 경우, 일반 빈곤층에 비해 젊고, 교육수준이 높고, 근로능력이 있으며, 남성이 가구주 가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면서, 이는 신용불량이라는

사회적 낙인과 경제사회로부터의 배제가 얼마나 취업을 어렵게 만드는가를 여실히 나타내주는 결과라고 하였다. 또한 신용불량빈곤층의 월평균소득과 총부채액은 일반빈곤층에 비해 높았으나, 월평균 저축액과 총금융자산 규모는 더 적었다. 비목별 소비실태를 살펴보면, 식료품비, 정보통신비, 보건의료비, 부채상환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외식비, 교통비, 주거관리비, 문화비의 경우 차이가 없었다. 또한 신용불량 빈곤층은 가족원 중에 총동구매나 도박성향이 높은 사람이 있었으며, 현재의 계층의식은 차이가 없었으나, 향후 계층귀속의식은 차이가 있어서 신용불량 빈곤층이 일반빈곤층에 비해 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최현자와 조혜진(2008)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다중연체자 299명과 재조정을 신청한 118명을 대상으로 채무재조정의 결정요인을 살펴본 결과, 결혼상태(미혼, 이혼/사별)와 부양가족수, 직업(서비스판매직, 자영업, 기능노무직), 월소득액(-), 조정후채무액, 월채무상환액, 월소득 대비 채무상환액, 월소득 대비 기타채무상환액, 기타채무상환여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다음으로 국외연구들 중, Peterson 등(1981)은 첫 상환금액에 따라 개인의 특성과 채무불이행 간의 관계가 변화하는 가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첫 상환금액에 따라 채무불이행 위험이 변화하였는데, 첫 상환액이 20%이상이면 채무불이행 위험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직업별로는 운전·일용직의 채무불이행률이 가장 높았고 전문직이 가장 낮았으나 첫 상환금액이 30%이상일 때는 직업이 유의한 영향을 가지지 않았으며, 첫 상환금액이 30%이상일 때 모든 연령층에 있어서 채무불이행 위험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나이가 어린 경우의 채무불이행률이 나이가 많은 경우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지급불능과 촉발사건, 소비자위험태도가 모기지의 채무불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Elmer 등(1999)의 연구에서는 "촉발사건(trigger events)"을 지불의무를 감당할 수 없도록 하는 예상치 못한 소득흐름 방해사건이나 쇼크로 정의하고, 신용사용 이후 발생한 "촉발사건"은 경제적 환경을 변화시켜서 모기지의 채무불이행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였다. Getter(2003)도 우연히 늦는 경우를 연체라고 하고, 두 달 이상 연체하는 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정의한 후, 지급불능(재정자산)과 주거소유여부, 이혼/별거, 특별히 낮은 소득과 같은 촉발사건들이 채무불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그는 채무불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으로 가족크기, 연령, 인종, 교육수준을 살펴보았으나, 가족크기만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촉발사건이 채무불이행에 미치는 영향과는 달리 부채상



환의 어려움에 관한 연구에서는(Godwin, 1999), 16가지 사건변수들 중에서 자동차구매나 질병은 발생확률이 높지만 가족구조변화나 공공지원수혜 등 나머지 14가지는 발생확률이 희박해서 부채상환어려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하면서, 부채위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비자발적인” 사건 때문이 아니라 가계가 스스로 한 경제적 결정의 결과라고 결론내렸다.

신용카드대출, 연체, 개인파산 간의 관계를 연구한 Stavins(2000)는 연체가능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들은 과거 파산 경험과 지난 12개월 동안 실업경험이며, 건강보험, 결혼, 높은 소득이나 순자산, 나이가 많거나, 교육수준이 높으면 연체가능성이 낮고, 소득과 신용카드부채를 통제한 후에도, 파산경험이 있는 사람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향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Lea 등(1995)은 부채는 불안정한 주거조건을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 가족들 간에 우선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면서, 부채심리학은 빈곤심리학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으로, 부채의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빈곤의 문제를 먼저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채무불이행에 영향을 주는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으로는 연령, 교육수준, 결혼지위, 주거소유형태, 가족크기, 건강, 취업여부 등이, 경제적 특성으로는 소득, 지출, 저축, 자산, 월부채상환액, 총부채액, 파산경험, 건강보험 등이, 심리적인 특성으로는 돈이나 부채에 대한 태도, 재정상태인지, 무관심한 지출습관, 투기성향, 근로의욕, 자존감, 자살과 범죄 충동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그 외에 재무관리행동에 관련된 변인들도 영향요인으로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향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위한 하나의 탐색적인 연구로서, 채무 불이행자들이 처한 상황과 사회·문화적인 연결고리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부족한 현실에서 채무 불이행자의 특성들을 파악함으로써 그들의 문제를 바로 이해하고 적절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집단이나 소수집단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유용한 방법인 질적인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채무 불이행의 원인이나 정도 및 대처방안들이 연령이나 결혼여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연령은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연령별 비율이 가장 높다고 보고되고 있는 30대(재정경제부, 2004; 임대봉·이병완, 2005) 중에서 기혼자로 제한하였다.

연구대상의 선정에 있어서, 관련 기관에서도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문제 때문에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고, 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어렵게 연구대상을 물색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면접의사를 물어보면 자신의 생활을 자세히 밝히고 싶지 않아서 또는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어서 등의 이유로 상당시간을 필요로 하는 면접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해 직업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였다. 전라남도의 금융기관 두 곳에서 현재 채무 불이행자로서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는 30대들 중에서 제보자를 추천하여 주도록 요청하였다.

표본의 크기를 남녀 각각 5명씩으로 전체 10명 내외로 계획하고, 한 금융기관에 제보자 목록을 요청하였으나, 조건에 맞는 9명의 목록만을 제공받았다. 이들 중 ‘면접에 응해 주고 싶지만, 근무지가 섬이라서 배를 타고 통근을 하며 보안문제 때문에 직장에는 외부인이 들어갈 수가 없고, 육지로 나오는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과 아이들을 돌봐야하기 때문에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다.’고 한 여성의 경우처럼 근무환경과 시간상의 문제를 이유로 면접을 거절한 4명을 제외하고, 5명에 대해 면접을 실시하였으나, 면접 도중 두 쌍이 부부인 것으로 나타나 각각 한 명씩을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또한 최근 친지들의 도움으로 모든 채무를 상환한 남성 한 명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2명에 대해서 면접을 완료하였다.

2차로 해당 기관에 면접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8명의 2배수인 16명을 섭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어렵게 8명의 목록을 제공받았고, 그 중 4명은 해당 금융기관 담당자에게는 면접에 응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전화로 이들에게 참여의사를 타진한 결과 ‘다시 사업해 보려고 서울, 대전, 광주 뛰어다니느라고 24시간도 부족해요. 신용불량자가 내가 보기에는 300~400만이 더 넘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나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왜 남의 아픔을 건드리는 거요?’라며 끝내 면접을 거부하였고, ‘자랑할 것도 아니지만, 숨길 것도 없다.’며 승낙한 4명에 대해서 면접을 실시하였다.

3차로 다른 금융기관에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20명의 목록을 요청하였으나, 5명의 목록을 제공받았으며, 2명은 ‘쌍둥이 출산’과 ‘전화로만 응답하겠다.’ 등의 이유로 제외하였고, 나머지 3명에 대해 면접을 완료하였다.

또한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된 자료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이들의 채무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채권담당자에 대해서도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제보자들과 인구통계학적 배경은 비슷하지만 채무 불이행자가 아닌 30대

기혼자들(남성 3명, 여성 3명)을 유의표집하여 이들에 대해서도 제보자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분석의 단서를 얻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 2006년 9월 3일부터 2007년 7월 10일까지 실시한 채무 불이행자 9명(여5, 남4)과 금융기관의 채권담당자 1명(남성)에 대한 면접결과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 2. 연구방법

먼저 해당 기관에서 조건이 맞는 채무 불이행자들에게 본 면접이 순수하게 연구의 목적으로 진행되는 면접으로서,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참여의사를 타진하여, 면접에 응하겠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후, 연구자가 다시 전화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의사를 확인하여 승낙한 경우에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은 1:1 대면적 면접으로 평균 2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각 면접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2시간 미만이었다. 제보자의 가정환경을 살펴볼 목적으로 제보자의 집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제보자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보자의 사업장이나 조용한 음식점에서 실시하였다. 주요 면접내용은 면접의 지침을 기본으로 하였고, 때 회 제보자의 양해를 얻어 녹음기를 사용하여 녹음하였으나, 1명의 경우 녹음을 거부하여 기록만으로 면접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면접내용은 바로 녹취를 하였으며, 녹취된 내용을 분석하여 직업의 역사, 채무불이행 경위, 경제적 특성 및 심리적 특성에 대한 언급을 정리하였다.

면접 참여에 대한 사례로 1차 면접에는 주로 선물용 케익이나 떡과 같은 식품을 이용하였고, 2차 면접시에는 각 제보자의 상황에 맞추어서 아기용품, 인테리어소품, 화장품, 서적, 현금 등을 이용하였다.

제보자들은 면접 초기에는 '뭐 상관없지만, 그래도 자랑할 일도 아니잖아요?'라고 하면서 비밀보장에 대해 거듭 확인하거나 채무 불이행자로서 자신의 생활상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표현하였고, 모두 본인의 실명을 사용하지 않길 원했다.

그러나 일단 연구자와의 래포가 형성된 후로는 '오히려 아는 사람한테는 이런 이야기 다 못하죠.'라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모르는 타인인 연구자와의 면접에 비교적 편안하게 참여하였고, '지금 제 양계장이 동생명의로 되어 있는데, 저한테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면 강제회수 들어올 거예요. 지금 강제회수 한다면 전 길거리에 나 앓을 수 밖에 없죠.'라고 한 남성 제보자의 경우와 같이 타인 명의로 은닉한 재산이나 그 밖의 절도 경험, 부채 때문에 야밤도주한 부모님에 대해서도 이야기의 맥락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였고, 자신의 연체경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보다 큰 목소리

로 이야기하는 등 면접에 심취하였다.

또한 형식적인 면접이 완료된 이후에도 연구자가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추가적인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보자들도 직접 연구자에게 전화를 하여 국민연금이나 친지의 휴학 문제 등을 문의하는 경우도 있었다.

## 3. 제보자들의 일반적 특성

먼저 여성 채무 불이행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자. A씨는 만 2세와 3개월이 된 두 자녀가 있고, 홀로 되신 친정어머니를 모시면서 가정살림과 자녀양육에 있어서 도움을 받고 있다.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출산 후 열흘 만에 일터로 나왔고, 일에 있어서도 '너무 순한' 남편 보다는 '한다면 하는 성격인' A씨가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 다 베푸는 스타일'이고, 소비생활에 있어서도 '쓸 때는 쓰는 스타일'이다.

B씨는 남편의 사업이 부진하자, 생활비를 벌기 위해 2교대의 경비로 일하고 있는데, 교대근무의 특성상 매우 불안정한 생활리듬을 유지하고 있다. 가사조력자가 없어서 근무가 걸린 날은 초등학교 6학년과 유치원생인 두 자녀를 '방치'하고 있다. 또한 B씨는 각종 헌금을 빠지지 않고 내고, 다른 지방의 교회에까지 찬양봉사를 다니는 등 교회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으며, 남편은 일 때문에 현재 포항에서 살고 있다.

C씨는 '전에는 소비형'이었으나, 지금은 '돈에 민감한' 남편 때문에 조심하고 있다. 자녀양육과 식품류는 시댁에서 도움을 받고, 의류와 긴급자금은 친동생의 도움을 받고 있다. C씨도 B씨의 경우와 같이 교회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개척교회에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재정적으로 힘들어지면서 교회에 더 매달리게 되었는데, 남편은 이런 C씨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남편에게 숨기고 활동하고 있다.

주차단속반인 D씨는 지난 해에 결혼해서 아직 자녀는 없으며, 류머티스 관절염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아파트 전기 기사로 일하고 있는 남편은 주말에도 일을 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D씨는 토요일은 하루 종일 친정집에서 놀고, 일요일에는 하루 종일 교회에서 활동한다. 하나뿐인 언니가 4년 전부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부채를 상환하다가 형부의 실직으로 상환이 어려워지자 대신 갚아준 경험이 있다.

E씨는 남편이 유흥비로 3~4천을 사용한 것이 드러나자 자신이 운영하던 핸드폰 대리점을 폐업하고 집을 나왔다가 돌아왔다. 부부가 모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남편이 먼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약 50만원씩 상환을

하였고, E씨도 호프집 '알바'를 시작하면서부터 약 50만원씩 상환하여, 남편은 60회 중 26회, 본인은 34회가 남았다. 연로하신 친정 부모님이 이혼한 오빠의 자녀들을 돌봐달라고 해서 '생활비도 아낄 겸 해서' 부모님의 집에서 부모님과 E씨의 가족 4명, 조카 2명과 함께 8식구가 살고 있으며, E씨 가족원들은 모두 교회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다음으로 남성 채무 불이행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자. F씨는 매우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6남매를 키우셨는데, 염씨의 어머니는 '돈 문제 때문에 아무 것도 안 들고 맨몸으로 야밤도주를 하신 적이 있다.' 4남2녀 중 셋째인 F씨도 3남2녀 중 막내인 부인도 양가 형제들의 사정이 다 그만 그만해서 도움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

G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버지가 경영하던 작은 사진관을 물려받아 지금의 스튜디오로 확장하여, 부인과 함께 여직원 한명을 데리고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인은 '사진기사로서 기술자일 뿐이고 와이프가 스튜디오를 총괄해서 대외적인 일은 다 보고 있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주말에 촬영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촬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밤늦게까지도 일을 하는 등 매우 불규칙한 생활을 하고 있다. 부모님의 집에서 함께 살며 가정살림과 자녀양육에 있어 도움을 받고 있으나, 부모님은 소득원이 없기 때문에 생활비는 모두 G씨의 몫이다.

H씨는 '살던 집 전세자금까지 다 빼서 써버리고, 길바

닥에 나왔게 되자 동생이 엄마 명의로 산 임대아파트'에 들어가 살고 있다. H씨의 부모님은 유흥이나 도박 같은 것도 모르고 열심히 사셨는데도,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납입금을 제때 내지 못해서 늘 교무실에 불려 다녔고, 시장 근처 영세민 밀집 지역에서 거주했으며, 아직도 부모님은 그곳에서 살고 있다.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7세 여아를 포함해서 두 명의 자녀가 있으며, 부인은 취업을 하지 않고 집안일을 하고 있다. H씨는 미용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인이 취업하기를 바라지만, 정작 본인은 취업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

I씨는 중학교 때는 포르노 잡지를 팔거나, '집도 털고 자전거도 많을 때는 한 번에 10대도 넘겨봤어요. 로얄살롱 로고 뜯어다 주면~' 하는 식으로 돈을 벌어서 '포카나 짤짤이' 같은 도박을 하는데 썼다. 상업고등학교를 나와서 프랑스로 유학을 가려고 했으나, 집안 형편상 갈 수가 없었다. 얼마 전 결혼해서 돈도 없거니와 추심을 피하기 위해서, 처가살이를 하다가 지금은 두 룸에서 생활하고 있다. 현재 무직으로서 임신한 부인을 직장까지 출근시켜주고, 부인이 돌아올 때까지 집안일을 돌보고 있다.

제보자들은 모두 30대의 건강한 기혼남녀로서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고, 여성 1명(E씨)과 남성 1명(I씨)을 제외하고 모두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며,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7사례 중에서 6사례는 맞벌이였고, 그 중 5사례는 부부가 모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있다. 또한 D씨를 제외한 나머지 제보자들은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한 경험

<표 7> 제보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제보자	성별	연령 (배우자)	학력 (배우자)	직업 (배우자)	자녀 (학년)	고향 (배우자)	출생순위 (부모동거/부양여부)
A씨	여	39 (45)	전문대졸 (고졸)	호프집경영 (음식점경영)	1남1녀 (4세, 3개월)	목포시 (해남군)	2남2녀 중 둘째 (모 동거/부양)
B씨	여	35 (39)	고졸 (대졸)	경비 (회사-기술직)	2남 (초6, 7세)	광양시 (구례군)	2남2녀 중 둘째
C씨	여	35 (39)	대학원졸 (대졸)	학원강사 (음식점경영)	2녀 (초6, 초3)	곡성군 (광주)	3녀 중 장녀
D씨	여	30 (35)	고졸 (대졸)	주차단속 (전기기사)	-	여수시 (여수시)	2녀 중 둘째
E씨	여	31 (36)	고졸 (대졸)	주부 (회사-출판사)	1남1녀 (초3, 4세)	별교군 (별교군)	3남3녀 중 막내 (부모동거)
F씨	남	36 (33)	고졸 (고졸)	양계장 (서빙)	1남1녀 (초2, 초1)	고흥군 (순천시)	4남2녀 중 셋째
G씨	남	39 (38)	고졸 (대중퇴)	사진관경영 (사진관실장)	2녀 (초2, 7세)	구례군 (보성군)	2남1녀 중 장남 (부모 동거/부양)
H씨	남	39 (32)	고졸 (고졸)	중고차영업 (주부)	1남1녀 (초3, 7세=장애)	광주 (강진)	2남1녀 중 2남
I씨	남	30 (30)	고졸 (대졸)	무직 (회사-사무직)	-	광주 (대전)	1남

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D씨와 I씨의 경우 결혼 전에 채무 불이행자가 되었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았으며, 두 경우 다 결혼당시 배우자들이 이들의 채무 불이행에 관해 알고 있었다. 또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G씨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남성 제보자들은 모두 '규모를 크게'나 '초특급 승진', '승승장구', '내가 다 총괄했다', '프랑스로 유학가려 했었다.'라는 식의 표현을 자주 사용하여 자신의 과거를 부풀려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었다.

#### IV. 연구결과

##### 1. 직업의 역사

먼저 여성 채무 불이행자들의 직업의 역사를 살펴보면<표 8>, A씨는 결혼 전에 경리로 일을 하다가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 두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지자 A씨는 5년전부터 프랜차이즈 형 호프집을 시작하였고, 남편도 2년 전부터는 회사를 그만두고 2800원짜리 돼지갈비를 주 메뉴로 하는 음식점을 시작했다. 남편의 음식점은 처음에는 잘 됐으나 주변에 경쟁업체가 입점하면서 지금은 현상유지도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B씨는 남편이 사업부진으로 인해 생활비를 주지 않자, 광양항만의 경비로 취업했으며, 비교적 일찍 결혼해서 경비 일을 하기 전까지는 취업을 해 본 적이 없다. B씨의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가게를 조그맣게 차렸으나 결국 폐업하였고, 그 후 무직상태로 있다가, 전에 다니던 회사와 비슷하지만 규모가 더 작은 회사에 들어간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

C씨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해서 결혼 전에는 돈은 벌어난 적이 없었고, 처음에는 부부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세운 남편의 사업이 잘 되다가, 외환위기 이후 점점 어려워져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다. 이후 부모님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남편과 함께 음식점을 시작하였으나, 음식점의 수입이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충당하기에도 벅찰 정도로 기대에 미치지 않아서, 개인과외와 학원관리교사를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학원이 끝나면 과외를 하러 갔다가 음식점이 바쁜 날에는 일을 도와야 하고, 늦은 시간에 귀가해서 밀린 집안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면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방학이 끝나면 학원 일을 그만둘 계획이다.

D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교 사환을 조금 하다가 아파서(류마티스 관절염) 그만둔 적이 있고', 그 후로 건설 회사에서 경리 일을 보다가 2001년부터 주차단속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연휴나 비가 오는 날은 쉬는 대신 일당이

없다. D씨의 남편은 결혼 전부터 아파트의 전기기사로 일하고 있다.

E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건설회사의 경리부에서 2년간 일하다가 결혼하면서 그만뒀고, 결혼하고 사립 유치원에서 1년 정도 교사로 일했고, 출산후 KTF대리점에서 1년 6개월 정도 일하다가, 핸드폰 대리점(대리점에 소속되어 인테리어 없이 하는 sub대리점)을 창업하여 2년 정도 운영하였다. 남편이 금전적으로 '사고를 치자' 폐업신고를 하였고, 둘째를 낳기 전까지 호프집에서 '알바'를 했다. 몸조리를 하러 친정으로 갔다가 지금까지 친정에 살고 있는데,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가면 다시 '알바'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E씨의 남편은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출판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다음으로 남성 채무 불이행자들의 직업의 역사를 살펴보자. F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양식장에서 일하다가, 군대 갔다 와서는 부산 수산물시장에서 일했고, 건강이 나빠져서 휴식을 위해 어머니가 계시던 벌교로 갔다가 계속 살게 됐다. 그러다 양계 배달일을 하다가, 직접 운영하게 되었고, 양계유통은 외상결재가 많아 현금이 잘 돌지 않아서 현금결재를 하는 생수장사를 해 볼까 하고 보고 있는 단계이다. F씨의 부인은 2~3년 전부터 식당에서 점심시간대에만 서빙 일을 하고 있다.

G씨는 아버지에 이어 2대째 사진 일을 하고 있으며, 사진 외에 '외도를 해 본 적이 없다.' G씨의 부인은 대학을 중퇴하고 회사원으로 일하다가 결혼하였고, 결혼 후에는 가정을 돌보다가 남편이 작은 사진관을 메이크업과 드레스 룸을 포함한 스튜디오로 확장하면서, 소품구매나 실내 인테리어 등을 맡아서 남편과 함께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

H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래시장 노가대로 시작해서, 당구장 근무, 침대 영업, 프레스 업체 공장장을 거쳐, 전기 관련 자영업을 하다가 '다 맡아먹고' 면접 당시 무직이었는데, 1차 면접 후 중고자동차경매회사에 영업사원으로 들어갔다. H씨의 부인은 첫 자녀출산 이전에는 미용실에서 일했으나, 이후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집안일을 하고 있다.

I씨는 고3때(상업고등학교라서) 아버지가 하시던 인장업을 1년 정도 했고, 이후 백화점 전자제품코너, 해충박멸업체 여수사무소 운영, 대체의학연구소 영업, 다단계 영업을 거쳐, 현재는 무직이다. I씨의 부인은 우리금융캐피탈에서 사무를 보고 있다.

대부분의 제보자들은 비정규직 근로자이거나 자영업자로서 직업적으로 불안정하였으며, 최근 몇 달 간 또는 면접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직업을 바꿨다.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자인 D씨의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8사례들은 제보자가 직접 또는 배우자가 자기 사업을 운영한 적이 있으며, 이 중 G씨 부부만이 사업부진에도 불구하고

<표 8> 제보자의 직업의 역사

시기 제보자	결혼전 (배우자)	결혼후 (배우자)	—	면접시 (배우자)
A씨	경리 (회사원)	주부 (계속)	— 퇴사	호프집 5년-노래방 (음식점 2년-노래방)
B씨	무 (회사원 8년)	주부 (창업)	— 폐업	경비 4년째 (무직-회사원)
C씨	무 (작은 건설회사 사장)	주부 (확장)	— 폐업	음식점 2년-과외, 학원강사 (같이)
D씨	학교사환-건축경리-시청 (전기기사)	계속 (계속)	— —	계속 (계속)
E씨	경리 (출판사)	교사-영업-KTF대리점-서빙 (계속)	— —	주부 (계속)
F씨	양식장 - 수산물도매 - 무직 - 양계유통 (무)	양계업 창업 (주부)	부진 —	양계업 + 생수 음식점 서빙(2~3년)
G씨	사진관 사장 (회사원)	계속 (주부 - 사진관)	확장 —	계속 (계속)
H씨	노가대 - 당구장직원 (미용실 근무)	침대도매 영업 - 레스공장장-전기사업창업 (주부)	폐업 —	무직-중고차 영업 1주일 (계속)
I씨	인장업 - 영업 - 다단계 (회사원)	무직(1년째) (계속)	—	(계속) (계속)

고 같은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고, A씨 부부와 C씨 부부, F씨의 경우는 타 업종으로 전환하였고, B씨의 남편과 H씨는 각각 근로소득자로 전업하였으며, E씨와 I씨는 취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여성 채무 불이행자와 남성 채무 불이행자의 부인들은 D씨와 E씨, 그리고 I씨의 부인처럼 지속적으로 취업활동을 한 경우와 H씨의 부인처럼 결혼 후 아무런 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남편의 사업부진이나 부채로 인해 가정경제가 위태로워지면서 소득창출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중에서 A씨와 G씨의 부인은 사업소득을, 나머지는 경비, 개인 과외, 학원강사, 음식점서빙 등의 비정규직 형태로 근로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 2. 채무 불이행의 경위

제보자들이 채무를 불이행하게 된 이유는 주로 생활비나 유흥비, 본인이나 배우자의 사업부진이나 사업실패 때문이다. 채권기관의 담당자는 '평생직장의 개념이 무너진 이래 미래를 미리 대비한다는 생각에, 2000년대 너도 나도 창업 열풍이 우리나라를 쓸고 갔죠. 그러나 많은 준비가 없이 시작한 창업이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을 유지하는데, 대개 평균 7년에서 길게 가는 경우가 20년 간다고 보고 있다.'고

한다.

먼저 여성 채무 불이행자들이 채무를 불이행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자. 먼저 A씨의 경우는 남편의 사업을 위해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남편의 사업부진으로 인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서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었다.

“상환날짜는 다 돼 가고, 출산날짜도 겹치고 해서, 미리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자하고 원금하고 해서 천천히 상환하게 해 준다고 하더라구요.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설명은 없었어요. 내가 그 사람(은행직원) 가만 안 돌려다가 내버려 뒀는데~”(A씨)

또한 A씨는 신용제도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정부가 하는 것은 잘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은행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어요. 은행이 나 같이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을 잘 해 줘야죠. 그게 책임감 있는 태도죠.'라면서 은행에서 신용정보 등록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현했다.

이에 대해 채권기관의 담당자는 '단기에 상환을 못한 게 사실이니까요. 그 때까지 못 갚겠다고 하니깐 상환방법을 제시한 거죠.'라고 하였고, B씨도 '은행사람들한테는 실망스러운 것 없다. 약속을 안 지킨 것은 우리고, 기한을 안 지키면 경고 없이 바로 넘어가는 것이 은행이죠.'라고 한다. B씨도

남편의 사업실패로 인해 채무 불이행자가 된 경우이다.

“남편이 8년 직장생활을 하다가, 젊었을 때 자기 사업해보자고 해서 친구랑 동업으로 시작했어요. 기술은 좋아서도 영업을 잘 못하는데다 경기가 계속 나빴어요. 그동안 집도 팔아 보냈고(5,000만원), 적금 탈 때마다 다 그리 들어갔고, 생활비도 한 번도 안줬죠. 남편업체들은 부도내버리고, 동업자는 나가고, 결국 폐업했죠. 내 이름으로 1,500만원 받은 것 중에서 1,100만원이 남았는데, 작년 말이 기한이었는데 상환을 못 했어요.”(B씨)

C씨의 경우도 남편의 사업실패로 인해 채무 불이행자가 되었다.

“크게 투자를 했다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게를 우리 두 사람 명의로 대출받아 시작했는데, 잘 안되었고, 건물주의 횡포로 권리금도 못 받고 나오게 되어서 그게 다 빚이 되어 버렸어요. 그때부터 신용불량자가 된 거죠. 특별하게 주식투자를 했달 지 한 게 아니라, 그저 열심히 했는데, 대출금을 갚지 못한 거예요.”(C씨)

D씨의 경우는 친정 부모님과 친언니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받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채무 불이행자가 된 사례이다.

“친정집이 너무 추워서 수리비로 농협카드 500만원 대출을 받았고, 또 언니가 빌려 달래서, 형부가 2년째 쉬고 계셔서~ 언니 네는 애들이 셋이나 되고, 또 부모님이랑(친정) 살기 때문에, 생활비 때문에, 국민카드에서 500만원 대출을 받아 줬고, 언니한테 LG카드를 빌려줬는데 한 500만원 정도 썼어요. 소비 같은 건 전혀 하지 않았어요.”(D씨)

E씨는 자신의 창업자금과 자동차 할부금 등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유흥비로 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가 돌려막기 금지정책으로 인해 터지면서 채무불이행자가 되었다.

“제가 핸드폰 대리점을 내면서 1600만원 정도 카드 대출을 받았고, 남편이 출판사 접대일 때문에 카드를 많이 썼어요. 월급이 안 나올 때 생활비를 카드로 충당했고, 차(아반테)를 살 때 1,000만원을 할부로 해서, 다 해 보니까 원금만 해서 8,000쯤 됐죠. 카드돌려막기를 하다가 돌려막기 금지정책이 나오면서 카드가 터졌죠. 제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남편은 물론이고 저도

신용불량자가 됐죠.”(E씨)

F씨의 경우는 사업부진과 사업자신고 누락이 채무를 불이행한 원인이다.

“양계장은 현금이 돌지 않아서 힘들어요. 설상가상으로 제때 신고를 못해서 사업자(양계장)가 취소돼버렸어요. 사업자라서 대출을 받은 건데 사업이 취소가 되었으니. 다 갚으라고 연락이 왔는데, 그렇지 않아도 힘든 상황에서 다 갚을 수가 없었죠.”(F씨)

G씨의 경우는 무리한 사업확장에 이어서 사업부진과 사업장의 화재로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대출금의 보증인이었던 동업자가 독립하면서 채무 불이행자가 되었다.

“사진관에 불이 나서 손실이 컸죠. 보험을 안 들어놨거든요. 부채도 있는 상황에서... 또 동업자가 나가면서 그동안 투자한 것들을 나눴고, 그 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 해서 대출을 받았었는데, 기한이 다 됐어요. 이미 나간 사람한테 다시 연대보증인 되어 달라고 할 수도 없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죠.”(G씨)

H씨의 경우는 자신의 사업실패로 채무 불이행자가 되었다.

“전기 관련 자영업을 했는데, 동업한 사람은 조용히 도망을 가버렸고, 내가 박 썼죠. 어떻게 보면~~ 또 영업도 잘 안되고, 어차피 다 영업인데 안 먹혀들어가기까 다 맡아먹고 접었죠.”(H씨)

특히 H씨는 연체등록 부채원금보다 등록금액이 더 많은 것에 대해 ‘못 갚고 놔둬버리니까 이자에 연체료까지 붙어서 그렇죠. 금방 계속 붙어나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죠. 원금은 60-70%고 나머지는 다 빌려 쓴 죄 값이죠.’라고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I씨는 대전과 서울 등지에서 건강식품을 주로 판매하는 다단계 업체에서 영업을 하다가 카드사용액과 카드대출금, 카드강, 사채를 포함하여 약 2억의 부채를 지게 되었고, 1년 2개월동안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채무 불이행자가 되었다. I씨가 행방을 감추자 시골의 부모님께 추심연락이 갔고, 그동안 부모님이 많이 갚아 주셨으며,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 월 40만원씩 상환하고 있다.

“대체의학연구소에 있을 때 투자를 시작했죠. 2년 내내 무보수였는데, 로비자금이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밥을 한번 먹어도 비싼 거 먹고, 술을 한 잔

제대로 하면 몇 십 만원되니깐. 제가 부산 쪽도 아는 분들이 있어서 많이 다녔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비만 계산해도 5천만원은 족히 들었을 거예요. 이걸 다 카드로 썼죠.”(I씨)

제보자들은 생활비나 유희비 때문에 채무 불이행이 된 사례도 있었지만, 대체로 사업의 부진 또는 실패로 인해 채무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또 얹친 데 덮친 식으로 출산이나 사업자 신고 누락, 화재, 권리금, 동업자 등의 문제가 사업의 부진과 겹쳐서 대출금의 상환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는 영세자영업자의 금융채무 불이행은 사업부진이나 사업실패가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한 재정경제부(2004)의 실태조사와도 일부 일치하는 결과이다.

채권기관의 담당자는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과소비 때문이죠. 물론 사업자금 같은 경우도 있지만, 40대 초반까지는 의식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위로는 매우 미안해 하고 어떻게든 갚으려고 하는데, 그 아래로는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라고 하며, 젊은 사람들의 안이한 금전태도를 채무 불이행의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 3. 경제적 및 심리적 특성

#### 1) 소득과 지출

먼저 제보자들의 소득에 대해 살펴보면<표 9>, 월평균 가계소득은 180~500만원이며, 외벌이인 H씨의 경우가 가장 낮은 180만원이고, 부부가 함께 스튜디오를 경영하는 G씨의 경우가 가장 높은 500만원이다. 주로 근로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는 가계소득이 180~280만원으로서, 전체 가계의 2006년 4사분기 월평균 소득인 3,168,045원(통계청, 2007)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아서 불안정한 상태이다.

주로 사업소득에 의존하는 가계는 근로소득에 의존하는 가계의 경우보다 월평균 가계소득이 더 높았으나, 소득흐름의 불규칙성 때문에 적절한 소비지출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G씨는 ‘요즘은 500만원, 7, 8월은 비수기라 이보다 못하고.. 겨울에도 덜하고... 더 많을 때도 있고, 들쭉날쭉해요.’라고 하였으나, 가계의 지출내역에서 월부채상환액 300만원과 보험 70만원 등 고정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달에 생활비를 크게 줄이지 못한다면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신용 이용자를 신용과다사용 심각도에 따라 고위험 집단, 위험집단, 잠재위험집단, 무위험 집단까지 4개 집단으로 나누어 영향요인을 파악한 결과, 소득의 불규칙성이 위험집단의 신용과다사용 심각도에 영향을 주며, 소득의 규모보다는 소득의 규칙성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정규적인 소득을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밝힌 조혜진과 최현자(2006)의 연구나 그 외 연구들(최현자, 2006; 최현자·조혜진, 2008)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지출에 대하여 살펴보자. 모든 제보자들은 소득을 전혀 남기지 않고 전액 지출하거나 오히려 적자이다. 제보자들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00~230만원이다. 이는 소득 대비 26~57.5%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체 가계의 2006년 4사분기 월평균 소비지출이 2,183,013원(통계청, 2007)이고, 월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8.9%인 것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부채상환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

제보자들은 가계의 상황에 맞추어 비목간 지출규모를 적절하게 통제하지 않고 식료품비나 교육비와 같은 일부 비목에 과다한 지출을 하고 있다. 품목별로 소비지출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식료품비는 70~80만원을 사용하는 G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40만원 이하로서 12~36.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식구들이랑 식사를 잘 다니니까~ 우리는 잘 먹자~ 주의예요.”(G씨)

피복비는 3만원~30만원으로 2.7~23.1%이다. 부채가 가장 많은 G씨의 피복비 비중이 23.1%로 가장 높고, 제보자들 중 절반은 5% 미만의 수준이다.

“스튜디오에 있다 보니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해요. 잘 입죠. 그렇다고 꼭 브랜드를 고집하지는 않아요. 한 달에 30만원 쯤”(G씨)

제보자들이 부채상환액과 함께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비목으로 꼽고 있는 교육비는 20~110만원으로 소득대비 20~73.3%에 달하며, C씨의 경우 소득의 73.3%를 교육비에 지출하고 있으며, H씨의 경우도 ‘지난 달에 애기 엄마가 애기들 책을 대책없이 많이 사버려서’ 이번 달 월부채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했으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저는 책을 많이 사주는 편이에요. 이번에도 200만원 어치 질렀어요. 백과사전이랑 전집 몇 개 사니까 200만원이 되더라구요. 우리 남편은 싫어해요. 아마 당장 취소하라고 할 거예요.”(C씨)

B씨의 경우에는 십일조를 포함해서 월평균 35만원을 종교활동에 지출하고 있으며, B씨와는 별도로 B씨의 남편도 용돈 중 일부를 종교활동에 지출한다. 또 E씨도 월 15만원을 현금으로 내고 있다.

2) 자산과 부채

보험료로 3~7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는데, '힘들 때 다 깨고, 최근에 다시 든' 경우가 많았고, '약관대출을 받아서 남을 게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었다. 제보자들의 절반은 저축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저축을 하고 있는 경우도 저축을 시작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저축의 목표가 없었다.

예비비는 안정적인 소득원을 가진 경우에도 예기치 않은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자기 사업을 하는 경우 소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물건을 돌리려면 현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D씨와 E씨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보자들은 예비비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F씨는 지병으로 천식을 앓으시는 어머니 때문에 비정기적으로 목돈이 들어가는데도 이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

전라북도 금산에 부인 소유의 빌라가 있는 I씨를 제외하고는 모든 제보자들이 거주지나 영업장 관련 보증금 외에 고정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제보자들은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가 적은 경우보다 많았다. 특히 부모님 소유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E씨와 H씨의 경우 부채는 있으나, 자산은 전혀 없다.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대한 질문에 대해 채권기관 담당자는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다가, 일단 보유주택을 매각하고 전세로, 다음으로 전세 보증금이 적은 곳으로, 그 다음에는 월세로, 그러다가 재산이 다

없어져버리죠.'라고 한다. 무리한 부채가 그동안 축적한 자산을 결국 소멸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제보자들은 모두 1가구 1차량이었으며, 1주일 전에 100만원짜리 중고차를 구입한 H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새 차를 구입하였고, D씨와 E씨, F씨의 경우 아직 납입할 자동차 할부금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는 상환문제를 경험하는 가계 중 직업상실이나 근로시간감소 등을 경험하는 가계는 24%이고, 의료관련 문제를 경험하는 가계는 6%이며, 55%가 과채무(overextended)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되는 것처럼(Canner & Lockett, 1991), 이들의 자동차구매는 생계를 위한 필수품이 아닌 사치재로서, 미래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대비하지 않은 채 무리한 지출을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제보자들이 부채를 사용한 이유는 사업자금과 생활비, 유흥비, 차량구매 때문이다. 연체정보를 등록하게 된 부채원금은 1,100~5,000만원이었으나, 현재 2,500~12,800만원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월부채상환액은 30~300만원으로, 월평균소득 대비 월부채상환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월평균 부채부담이 16.7~60%이다.

재정경제부(2004)의 실태조사의 경우에도 영세자영업자의 연체정보 등록 부채원금은 약 4,000만원으로 보고되었으나, 본 제보자들과 같이 그 외의 부채가 상당액 있을 수 있으므로, 이들의 재무상태를 판단할 때 연체정보 등록 부채원금과 함께 부채총액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표 9> 제보자의 경제적 특성 (단위 : 만원)

제보자	항목 (배우자)	소득 (배우자)	월평균 소비지출	주 택	그 외 부동산	저축	보험	총부채 잔액	월부채 상환액	예비비
A씨	350 (공동)	100	전세 APT 보증금 6,000	두 가게 2,000	-	50	4,000	200	-	
B씨	160 (120)	130	임대 APT 보증금 1,100	-	40	50	7,000	60	-	
C씨	250 (150)	230	전세 APT 보증금 7,000	-	20	30	10,100	120	-	
D씨	80 (170)	80	전세 APT 보증금 2,700	-	110	24	2,200	49	20	
E씨	20 (250)	170	부모소유 주택 거주	-	-	3	4,500	97	2~300	
F씨	200 (50)	110	전세 APT 보증금 1,500	양계장 1억추정	30	50	2,900	60	-	
G씨	500 (공동)	130	부모소유 APT 거주	사진관 9,500	-	70	12,800	300	-	
H씨	180 (0)	120	부모소유 APT 거주	-	-	30	2,500	30	-	
I씨	50 (150)	100	전월세 투룸 3,000에 월 10	빌라 5,000	50	25	1,080	40	-	



## 3) 심리적 특성과 채무관리행동

제보자들 중 B씨와 D씨, E씨, G씨는 '남의 돈 쓰는 게 무섭다는 거 알았으니까 이제 안 써야죠.'라면서 부채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나머지 제보자들은 모두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웠고, 잘 될 수도 있을 테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채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사업상 필요한 겁니다. 없는 사람이 한 단계 도약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돈이 생겨도 안 갚죠. 여윌 돈 있으면 사업을 더 키우려고 하죠. 사업하는 남자들은 다 그래요. 특히 내 나이쯤 되는 남자들은 크게 하고 싶어 해요.” (F씨)

그러나 부채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제보자들도 최근 또 다른 부채를 쓰거나, 앞으로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B씨의 경우는 최근 친언니가 내 놓은 아파트를 4,500만원에 구매하기로 했으며, 이미 은행에서 이 집을 담보로 2,500만원을 대출받았고, 나머지 2,000만원도 곧 이사를 들어가면서 지불해야 하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보증금 1,100만원 외에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에 대해 '어떻게 되겠죠~'라고 말했다.

“또 똑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언니나 부모님을 위해 부채를 쓸 것 같아요. 가족이니까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B씨)

또 G씨는 '이제는 모든 게 달라졌어요. 남의 돈 절대로 안 써야죠.'라고 했으나, 얼마 전 아파트 리모델링을 실시하였다.

비교를 위해 면접을 실시한 비교집단의 경우 향후 부채 사용에 대해 '절대 안 써요., 없으면 규모를 줄여서 있는 내 돈 범위 내에서 해야죠.'나 '1번 정도는 모험을 해 봐야 될 거 같기도 해요. 그런데 선불리... 하여간 지금은 아니에요. 전 안정 위주로 많이 나가요.'라는 식으로 부채에 대한 태도나 실제 행동 모두 대체로 부정적이다.

제보자들의 경우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앞으로 부채를 사용할 의도가 있으며 실제로 추가적인 부채사용 행동을 보이고 있어서, 기본적인 재무지식, 태도, 기술을 포함한 재무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어려운 경험에서 배우는(learn from bad experience ; Garmann & Forgue, 1994)'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채사용의도(willingness to borrow)가 부채규모와 부채사용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며(Godwin, 1997; Godwin, 1998), 또

한 단순히 빚을 지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 가계들이 사용하는 자기규제규칙(self-imposed rules)이 채무 불이행에 관련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한 Thaler(1990)의 주장과도 맥을 같이 한다.

A씨는 '일단 사자주의'이고, G씨는 '잘 먹자주의'이다. 절약주의라고 응답한 H씨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보자들은 '쓸건 쓴다' 또는 '급한 건 쓴다'는 식으로 절약이나 저축보다는 소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도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해 현재를 꼬질꼬질하게 산다는 것은 싫다. 노후를 위해 모은다는 것도 누가 먼저 죽어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나? 난 남기고 모으는 것보다 지금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요.” (E씨)

이는 과거 2년 동안의 부채경험을 토대로 non, mild(지불 늦은), serious(소송까지 간)의 3집단으로 나누고, 소비자행동의 집단간 차이를 조사한 결과, 연체하지 않은 non 집단의 경우 담배나 아이들의 크리스마스선물을 사는 경향이 낮았다는 연구와 비슷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한 H씨를 포함한 대부분의 제보자들은 미래에 대한 대비보다는 현재의 만족감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지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체하지 않은 집단의 시간지평이 나머지 집단의 경우보다 길었다고 보고한 Lea 등(199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제보자들은 공통적으로 가계부를 규칙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있으며, 예산과 결산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부부간의 재정관련 의사소통이 부족하였는데,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고 전혀 문제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우리 남편은 미리 말하는 법이 없어요. 저는 은행이나 세무서에서 뭔가 날라 와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1년에 몇 번씩은 터져요. 또 터질 조짐이 보여요. 뭔가 날라 오고 있어요. 물어봐도 말을 안 해요. 돈 문제에 대해 대화가 없는 것이 문제죠.”(B씨)

“우린 서로 수입을 오픈하지 않아요. 아니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도 변수가 많고 나도 변수가 많기 때문에. 남편은 부채상환하고, 저는 아이들 관리하죠. 사실 남편이 아이들 학원이나 교회를 싫어 하니까,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되요.”(C씨)

이는 소비자부채에 있어서 심리적인 요소가 중요함을

확인한 Lea 등(1995)의 연구에서 금전관리능력과 비경제적지출, 낮은 신용지위 등이 부채사용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주며, 그 중에서도 금전관리능력이 특히 중요하다고 지적한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또한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경우 연체미경험자에 비해 재무관리행동의 수행 정도가 더 낮았다고 보고한 성영애와 정희영(2006)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채무 불이행자들로 하여금 보다 체계적인 재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가계의 재무목표와 재무계획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그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들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양질의 재무상담과 재무관리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선행연구들도 재무 관련 상담이나 재무교육이 채무 불이행자 또는 일반인의 재무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성영애·정희영, 2006; 안창희·정순희, 2006; Garman & Fogue, 1994; Joo & Grable, 2000).

## V. 결과 및 제언

금융채무 불이행자 문제의 해결은 금융부실을 해소함으로써 기업과 국가경제의 안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금융채무 불이행자 개인과 가계의 복지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본 연구는 그 대상을 30대의 기혼인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한정하고, 심층면접기법을 이용하여 이들의 경제적 특성 외에도 일반적인 특성과 사회·심리적 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제보자가 직접 또는 배우자가 자기 사업을 운영한 적이 있으며, 직업의 변동이 잦았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 채무 불이행자와 남성 채무 불이행자의 부인들은 대부분 남편의 사업부진이나 부채로 인해 가정경제가 위태로워지면서 비정규직의 형태로 근로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10년 전 IMF 국제구제금융 이후 사회적으로 소자본 창업과 벤처창업의 열풍이 불었으나, 철저한 조사와 준비가 없이 시작한 창업은 실패로 끝나, 창업자금을 날리거나 고스란히 부채로 남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창업하려고 하는 분야에 맞는 적절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희망자들에게 제대로 된 창업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최근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예정자 등을 위한 컨설팅과 인터넷학습을 포함한 소상공인 종합지원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서 매우 다행한 일이며,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를 적

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보자들은 생활비나 유흥비 때문에 채무 불이행이 된 사례도 있었지만, 대체로 사업의 부진 또는 실패로 인해 채무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또 옆친 데 덮친 식으로 출산이나 사업자 신고 누락, 화재, 권리금, 동업자 등의 사건이 사업의 부진과 겹쳐 발생함으로써 대출금의 상환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 특히, 여성들은 배우자나 친지로 인해 채무불이행자가 되었고, 그 배우자나 친지도 채무 불이행자로서 해당 채무를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제보자들이 갚아야 하거나 실제로 갚고 있다. 따라서 친지들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대출을 받아 주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가계의 경제적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또한 권리금이나 동업자의 문제도 제기되었는데, 현재 법에 정확한 규정이 없고 계약서의 문언이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에 계약서에 청산시 또는 투자이익 분배에 관한 권리나 권한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해야 하며,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 창업희망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이 홍보될 필요가 있다.

셋째, 제보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180~500만원으로, 주로 근로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의 가계소득이 주로 사업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보다 낮았으며, 으며, 사업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는 소득흐름이 불규칙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 월평균 지출은 100~230만원이며, 가계부를 규칙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부부간의 재정관련 의사소통이 부족하며, 식료품비나 사교육비와 같은 일부 비목에 과다 지출하고 있다.

채무 불이행자로서 과다한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본 제보자들의 경우, 무엇보다도 소득을 획득하여 채무를 상환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가계경제의 유지에 있어서 주어진 소득으로 균형있고 계획적으로 지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재무목표와 재무계획, 재무관리방법과 같은 구체적인 재무관리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제보자들도 자신들이 재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재무관리지식이나 정보가 없고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으며, 관련 교육과 상담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는 채무 불이행자들에 대해 교육이수의 의무화나 혜택부여와 같은 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들이 재무관리교육에 참여하고 실제로 가계운영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넷째, 제보자들은 현재 2,500~12,800만원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월부채상환액은 30~300만원이다. 대부분의 제보자들이 자산보다 부채가 많고, 예비비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 예비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만성적인 적자로서 여유자금이 없으며,

여유자금이 생겨도 모두 부채상환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부채를 사용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로 기존 채무를 모두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새로운 부채를 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채를 사용하는 것은 레버리지 효과를 보기 위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본 제보자들의 경우와 같이 기대했던 것보다 소득이 더 적게 되면, 부채 상환부담 때문에 기초 생활비마저도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결정할 필요가 있다. 본 제보자들은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해 채무 불이행자로서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부채사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채무 불이행자들을 대상으로 재무상담을 통해 자신의 가계상황을 정확히 진단하여 알게 할 필요가 있으며, 부채관련 가계실태나 사례 등을 중심으로 한 재무관리교육을 통해 부채의 사용이 가계에 가져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여신을 통해 이윤을 획득하려고 하는 금융기관에게 장기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이러한 교육의 실시를 기대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보다는 민간기업을 설립하거나, 각 지역대학의 관련 연구소에서 extension program 으로서 이러한 교육이나 상담을 실시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특히 소비자학 관련 연구소는 채권자보다는 채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적합할 것이다.

다섯째, 대부분의 제보자들은 현재지향형이었으며, 이에 따라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만족을 연기시키는 것 보다는 현재의 소비를 통해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선호하였다. 개인마다 시간에 대한 가치관은 다르겠지만, 상당한 규모의 부채상환을 하고 있는 채무불이행 가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부채의 완전상환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충동에 의한 소비나 불필요한 소비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만족지연과 목표달성에 대해 인식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단기목표와 장기목표를 세분화하여 단기목표 달성을 통해 만족지연의 효과를 맞출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채무 불이행자에게 채무불이행 관련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보자들은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기준이나 기록보존기간, 등록에 따른 경제적 제약 사항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채무재조정 노력을 하지 않고, 돌려막기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거나 심지어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집을 나가버리거나 주거지와 전화를 바

꾸는 방법으로 행적을 감추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제보자들은 채권기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협상이 가능한 대안들에 대해 정확히 모른다고 하였으며, 채권기관의 담당자도 채무자들이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가 가장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제도를 체계적으로 보완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들이 관련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찾아야 하는데, 개별 소비자는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보를 탐색하는 시간의 기회비용을 높게 평가하여 정보탐색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정부차원에서 채무 불이행자들을 대상으로 신용정보등록제도와 채무 재조정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그들 스스로 신용정보를 잘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본 제보자들처럼 젊은 채무 불이행자들의 경우 인터넷 활용도가 높으므로 오프라인 교육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시급히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장 우선보다는 안정 우선의 대출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자금이 필요한 개인이 자신의 소득이나 자산 등의 재무실태파악을 기초로 상환가능성을 고려하여 부채 사용여부를 결정하여야겠지만, 여신기관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개인이나 개별 가계의 채무 상환능력을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심사하여 대출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신용정보만으로 대상자의 지급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신용정보관리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부실채권을 막고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게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개별 가계의 안정성 역시 확보하여 건전한 국가경제를 영위하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득 평가시 부채규모를 고려하지 않는 정부정책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사례가 많았다. 구체적으로 유치원지원제도와 실업급여, 건강보험, 국민연금제도가 언급되었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유치원지원제도와 건강보험은 소득에 더하여 자산과 자동차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는데, 소득이나 자산의 유무에 더하여 부채규모까지 고려해야 해당 가계의 경제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융통성과 일관성 사이에 딜레마가 있기는 하지만, 수급대상자들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표본을 선정함에 있어 연령과 결혼여부를 통제하기 위하여 30대의 기혼자로 한정하였으나, 정보누출의 문제로 인해 모집단목록을 입수할 수 없어서 무작위적으로 추출하지 못하고, 채권관련기관에서 먼저 연구참여의사를 타진한 후 이에 응한 경우에만 연구자에게 그 목록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편의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연령이나 직업에 따라 또는 채무금액에 따라 연체 원인이나 대응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조건을 통제 한 후 이들에 대한 심층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접수 일 : 2008년 03월 15일
- 심사 일 : 2008년 03월 25일
- 심사완료일 : 2008년 06월 16일

#### 【참 고 문 헌】

- 강경훈(2008). 2008년 1월 23일. 국정브리핑.
- 국정브리핑(2008). <http://korea.kr>. 실록경제정책 : ② 신용불량자 뇌관 해체. 2008년 1월 23일자.
- 김순영(2005). 신자유주의시대 경제정책과 민주주의 : 김대중 정부 신용카드정책과 신용불량자 문제를 중심으로. *노동사회*, 103, 113-122.
- 류정순(2004). 신용불량 신빈곤층-실태와 대안-. *아세아연구*, 47(2), 19-60.
- 머니투데이(2006). <http://stock.moneytoday.co.kr>. 규제는 변칙을 낳고 변칙은 부실 부른다. 2006년 4월 14일자.
- 박상수(2002). 한국 신용카드 산업의 과제. *기업경영연구*, 8(1), 189-210.
- 박종현(2003). 신용불량자 문제와 그 대응방향 - 채무자 우호적 파산제도의 정비 -. *응용경제*, 5(3), 181-211.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2006). *개인파산·회생 실무*. 서울: 박영사.
- 성영애·정희영(2006). 금융채무불이행자와 연체미경험자의 채무상태, 신용에 대한 태도 및 채무관리행동 비교분석. 2006년 한국소비자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 1-20.
- 안창희·정순희(2006). 개인채무교육이 채무행동 및 객관적 경제복지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17(2), 197-219.
- 이건범(2003). 신용불량자 문제의 해결방안. *주간금융동향*, 12(23), 2-7.
- 이상경(2003). 신용불량자 양산에 따른 경제교육 개선. *논문집*, 23, 299-310.
- 임대봉·이병완(2005). 신용불량자 문제의 요인분석. 200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자료집, 1-22.
- 재정경제부(2004). 신용불량자 현황 및 대응방향. 2004년 3월 10일자 보도참고자료.
-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2005).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방안. 2005년 3월 23일자 보도자료.
- 전국은행연합회. <http://www.kfb.or.kr>. 신용정보관리규약 2006-6차.
- 조혜진·최현자(2006). 소비자의 신용과다사용 문제와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17(2), 155-178.
- 최현자(2006). 다중연체자의 채무재조정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67-81.
- 최현자·조혜진(2008). 다중연체자의 채무재조정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19(1), 25-46.
- 통계청. <http://www.nso.go.kr>.
- Canner, G. B. & Lockett, C. A.(1991). Payment of household debts. *Federal Reserve Bulletin*, Apr, 218-229.
- Elmer, P. J. & Seelig, S. A.(1999). Insolvency, trigger events, and consumer risk posture in the theory of single-family mortgage default. *Journal of Housing Research*, 10(1), 1-25.
- Evans, D. A. & Lown, J. M.(2008). Predictors of chapter 13 completion rates : The role of socioeconomic variables and consumer debt type.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9(2), 202-218.
- Garman, E. T. & Fogue, R. E.(1994). *Personal finance(4th ed.)*. Boston : Houghton Mifflin Company.
- Getter, D. E.(2003). Contributing to the delinquency of borrowers. *Journal of Consumer Affairs*, 37(1), 86-100.
- Godwin, D. D.(1997). Dynamics of households' income, debt and attitudes toward credit, 1983-1989. *Journal of Consumer Affairs*, 31(2), 303-326.
- Godwin, D. D.(1998). Household debt quintiles : Explaining changes 1983-1989. *Journal of Consumer Affairs*, 32(2), 369-394.
- Godwin, D. D.(1999). Predictors of households' debt repayment difficultie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0(1), 67-78.
- Joo, S. & Grable, J. E.(2000). Improving employee productivity : The role of financial counseling & education. *Journal of Employment Counseling*, 37(1), 2-15.
- Lea, S. E. G., Webley, P. & Walker, C. M.(1995). Psychological factors in consumer debt : Money management, economic socialization, and credit use.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6, 681-701.
- Peterson, C. M. & Peterson, R. L.(1981). Downpayments, borrower characteristics, and defaults, *Journal of Retail Banking*, 3(1), 1-6.
- Stavins, J.(2000). Credit card borrowing, delinquency, and personal bankruptcy, *New England Economic Review*, July/August, 15-30.

---

Thaler, R. H.(1990). Anomalies - Saving, fungibility, and mental account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4(1), 193-205.